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3가단2142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이드 담당변호사 최웅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심 담당변호사 최유영

피고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주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하은, 김백용, 채승준

2.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4. 11. 19.

판결 선고 2024. 12.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20. 11.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주식회사 D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11. 27. 접수 제2695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21. 11.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11. 10. 접수 제2638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단지 'D'라 한다)에게 냉동설비공사 등을 해주고도 D로부터 41,665,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2020. 1. 15. D를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D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03064호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2020. 7.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96,238,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20.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D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20. 11. 26. 근저당권자를 피고 C,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11. 27. 접수 제2695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② 2021. 11. 10. 근저당권자를 피고 D 주식회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11. 10. 접수 제26385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2021. 8. 10.경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들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였을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8. 11.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집행문이 부여될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등 참조).

D가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D에 대하여 원고 A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 B이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각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는 이 사건 부동산과 아산시 F 콘도 제2층 G호에 관한 1/20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기술보증기금, H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금융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당초 D가 담보로 제공한 서울 금천구 I아파트형공장 제1층 J호(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대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9. 1. 23. 근저당권자를 피고 C, 채무자를 피고 D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24. 접수 제1403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국 2020. 6. 29. 접수 제145393호로 2020. 6. 29.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마쳐진 사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0. 11. 27.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과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D 사이에 체결된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D 주식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된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피고 C는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D 주식회사는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병훈

별지